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54호

「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」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규정(3개)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리츠 활성화 방안('24.6.17, 관계부처 합동)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보고·공시가 중복된 사항의 합리적 조정 및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,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전 자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등을 위한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(예규)」

- 영업인가(등록) 전 매매계약 기준 명시(안 제4조의2 신설)
 - 취득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

나. 「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(훈령)」

-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의무 삭제(안 제3조제1항 제1호)
 - 투자설명서는 공시되고 있으므로, 국토교통부 장관에 별도 제출 불필요
- 임원·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공시 사항에서 제외(안 제6조제1항제2호, 제2항제3호, 제5항)
 - 임원의 경력은 투자보고서로 공시,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은 공시 사항이므로 임원·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시의무는 삭제
-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공시로 변경(안 제11조제1항)

다. 「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(훈령)」

-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설치, 위원장 임명 방법 등 개선(안 제27조의2제2항, 제3항, 제5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부동산투자제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/> 정책자료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(우편번호 30103)

☎ 044-201-4812, 3417 Fax 044-201-5538